

2023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고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3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 지원’ 공모를 시행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준비금 지원,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 필요한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창작활동 대관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위한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사업, 지역 기반 경기도 예술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2023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 지원’에 관심 있는 예술인과 예술사업체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3년 4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 |
|------|--|
| 사업목표 | 경기도 예술인의 창작 및 자립활동을 통한 자생력 제고 |
| 사업명 | 2023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 사업기간 | 2023년 06월 ~ 2023년 11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 | 2023년 06월 ~ 2023년 11월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 | 2023년 06월 ~ 2023년 11월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
| 지원규모 | 2023년 06월 ~ 2024년 01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 | 금750,000,000원(금칠억오천만원) |
| 지원유형 | |

| 사업명 | 지원대상 | 사업비(천원) | 지원규모 |
|-------------------------|---|---------|-------------------------------|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 경기도내 거주 청년 예술인 - 만 19세 ~ 만 34세 예술인 (2022.12.31. 기준) (1988.01.01. ~ 2003.12.31. 출생자) | 600,000 | 최대 300만원 (200명) |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 · 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80,000 | 최대 400만원 (20건 내외) |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 경기도내 거주 예술인 및 예술단체 | 40,000 | 최대 200만원 (20건 내외) |
|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의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 | 40,000 | 1,000만원 준비지원(3) 성장지원(1) |

2.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대상

| 사업명 | 내용 |
|-------------------------|---|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 - 만 19세~만 34세 예술인 (1988.01.01. ~ 2003.12.31. 출생자) |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 경기도 내 거주하는 예술인 및 경기도 소재 예술단체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창작공간 임차료 중복신청 불가 (반드시 한 사업을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의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의 협동조합 혹은 예비협동조합 |

○ 사업별 신청제외 대상

| 구분 | 내용 |
|----------------------|---|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2019~2022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선정예술인 - 20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수혜 예술인 - 2023년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 * 수당장려금 : 무정산을 원칙으로 지급되는 1회성의 지원금 - 정산서 미제출 예술인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지원불가 - 자가 소유 및 가족, 친족 간 거래 불가 - 2023년 타 기관으로부터 같은 공간의 임차료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 구 분 | 내 용 |
|----------------------------|--|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소유 및 가족, 친족 간 거래 불가 - 2023년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프로젝트로 대관료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 단순 친목 및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대관 지원 불가 - 경기도 외 타 지역의 공간을 대관하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 사업체가 부도, 회익,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 공통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마감일(2023.5.04.)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정산서 미제출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보조금 위반행위를 한 개인·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외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사업별 신청자격 기준 참고 |

○ 신청제외 대상

| 사 업 명 | 내 용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3. 추진 일정

| 구 분 | 일 정 (예정) |
|-------|---|
| 공 고 일 | 2023. 04. 17. (월) |
| 접수 기간 | 2023. 04. 17. (월) ~ 2023. 05. 04. (목) 17:00 |
| 심의 추진 | 2023. 05. 08. (월) ~ 2023. 05. 23. (화) |
| 결과 발표 | 2023. 05. 26. (금) 예정 |
| 교부 | 2023. 6월 예정 |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및 접수처

| | |
|-------|---|
| 신청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p>※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 신청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함.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p>※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접수바랍니다.</p> |
| 문 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관련: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31-0866~7,0880) ■ 온라인 접수 시스템(엔카스)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장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진행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 접수 마지막날은 15시까지 운영)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

1.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
| 사업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예술인 대상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 지원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 (※공고일 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함) ■ 만 19세~만 34세 예술인 (1988.01.01. ~ 2003.12.31. 출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 지원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미술(응용미술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분야의 직업 예술인으로 예술활동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세부기준표 참고)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3. 그밖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보유 예술인 우대 (* 가산점 +2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산점 +2점) 또는 비상근작단시간 근로자 구직 청년 예술인우대(* 가산점 / +1점) ↑개선(※증빙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 목록 확인) |
| 세부지원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에 관련된 창·제작비 ■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협동조합 설립 및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금 ■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성을 갖춘 예술프로젝트 ■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 비용 ■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와 창작 환경 개선 <p style="margin-top: 10px;">※ 자립준비금은 창작지원금이 아닌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활동을 위한 ‘장려금’ 성격의 준비금이므로 단순 창작활동,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활동은 지원하지 않음 (주안점)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 단체설립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립준비금을 활용. 향후 지속가능성 및 사업성 판단 필요</p> |

| 지원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6억원 ■ 개인당 300만원 지원 (200명 선정) ※ 평생 1회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절차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사업신청</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심의 및 결과발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교부신청</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교부 및 사업수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모니터링</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정산보고</div> </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p>※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하는 바, 교부 신청 시 사업 내용 및 예산변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선정 취소 가능)</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기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심의항목</th> <th style="width: 65%;">심의내용</th> <th style="width: 20%;">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자격 평가 (30%)</td> <td>예술활동증명 기준에 부합하는가 ?</td> <td>10</td> </tr> <tr> <td>지원자의 예술성 및 창의력이 우수한가?</td> <td>10</td> </tr> <tr> <td>지원자의 창작 및 자립활동 역량이 우수한가?</td> <td>10</td> </tr> <tr> <td rowspan="4">사업성 평가 (40%)</td> <td>활동계획(프로젝트) 내용에 참신성, 독창성이 있는가?</td> <td>10</td> </tr> <tr> <td>창작 및 자립활동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td> <td>10</td> </tr> <tr> <td>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이 사업에 적절한가?</td> <td>10</td> </tr> <tr> <td>자립준비금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td> <td>10</td> </tr> <tr> <td rowspan="3">기대 효과 (30%)</td> <td>창작 및 자립활동의 성장가능성이 있는가?</td> <td>10</td> </tr> <tr> <td>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예술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td> <td>10</td> </tr> <tr> <td>창작 및 자립활동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td> <td>10</td> </tr> <tr> <td rowspan="4">가산점</td> <td>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보유한 도내 청년예술인인가?</td> <td>2</td> </tr> <tr>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가?</td> <td>2</td> </tr> <tr> <td>공고일 기준 구직 상태 혹은 비상근직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도내 청년예술인인가?</td> <td>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5</td> </tr> </tbody> </table> | | | 심의항목 | 심의내용 | 배점 | 자격 평가 (30%) |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부합하는가 ? | 10 | 지원자의 예술성 및 창의력이 우수한가? | 10 | 지원자의 창작 및 자립활동 역량이 우수한가? | 10 | 사업성 평가 (40%) | 활동계획(프로젝트) 내용에 참신성, 독창성이 있는가? | 10 | 창작 및 자립활동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10 | 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이 사업에 적절한가? | 10 | 자립준비금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 10 | 기대 효과 (30%) | 창작 및 자립활동의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 10 |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예술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 10 | 창작 및 자립활동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 10 | 가산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보유한 도내 청년예술인인가? |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가? | 2 | 공고일 기준 구직 상태 혹은 비상근직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도내 청년예술인인가? | 1 | 합계 | 105 |
| 심의항목 | 심의내용 | 배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평가 (30%) |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부합하는가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자의 예술성 및 창의력이 우수한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자의 창작 및 자립활동 역량이 우수한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성 평가 (40%) | 활동계획(프로젝트) 내용에 참신성, 독창성이 있는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창작 및 자립활동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이 사업에 적절한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립준비금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대 효과 (30%) | 창작 및 자립활동의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예술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창작 및 자립활동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산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보유한 도내 청년예술인인가?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가?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고일 기준 구직 상태 혹은 비상근직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도내 청년예술인인가?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1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신청 및 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접수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선택 시 ‘[붙임1] 예술활동 증명기준에 관한 세부기준표’ 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40%;">NCAS 분야 선택</th> <th style="width: 60%;">해당 예술분야</th> </tr> </thead> <tbody> <tr> <td>문학</td> <td>문학</td> </tr> <tr> <td>시각예술</td> <td>미술, 사진, 건축, 만화</td> </tr> <tr> <td>연극</td> <td>연극</td> </tr> <tr> <td>무용</td> <td>무용</td> </tr> <tr> <td>음악</td> <td>음악, 국악</td> </tr> <tr> <td>다원예술</td> <td>영화, 연예</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개인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div> | | | NCAS 분야 선택 | 해당 예술분야 | 문학 | 문학 | 시각예술 | 미술, 사진, 건축, 만화 | 연극 | 연극 | 무용 | 무용 | 음악 | 음악, 국악 | 다원예술 | 영화, 연예 | | | | | | | | | | | | | | | | | | | | | |
| NCAS 분야 선택 | 해당 예술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학 | 문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각예술 | 미술, 사진, 건축, 만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극 | 연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용 | 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악 | 음악, 국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원예술 | 영화, 연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수 제출자료 | <p>① (필수사항)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신청서</p> <p>1-1. 자립활동계획서</p> <p>1-2. 예술활동 실적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도록,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링크 등 첨부 <li style="padding-left: 20px;">(단순 작품 사진이 아닌, 신청인의 이름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여야 함) <p>1-3. 주민등록초본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이 확인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및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필수 기재’ 하여 스캔이미지 첨부 <p>1-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p> <p>1-5.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p> <p>② 선택사항 및 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증명서(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p>※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p> <p>※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1건의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 ‘예술분야_신청자 본명’ 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padding-left: 20px;">예) 파일명 : 문학_홍길동 / 미술_피카소 / 영화_봉준호</p> <p>※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p> |
| 의무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예술인은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 필수 참여 ※ 선정 후 별도 공지 예정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유사사업으로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은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당장려금 : 무정산을 원칙으로 지급되는 1회성의 지원금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개인은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당 1개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완료 이후에는 지원분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 |
|----|--|
| 문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31-0867) ■ 온라인 접수 시스템(엔카스)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장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진행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 접수 마지막날은 15시까지 운영)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
|----|--|

2.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
|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단체)의 자립을 위해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사업자등록증 우대 (* 가산점 +5점) (단,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등록증명서여야 함) |
| 지원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부합해야 함 1. 경기도 소재의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공고일 전 설립된 사업체로 경기도 내 소재지 증명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증빙 가능하여야 함 2. 월세로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창작 및 자립활동 등을 목적으로 예술인 단체가 사용 및 운영 3.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명과 지원사업 신청인명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신청인 본인은 반드시 공간을 공동으로 운영 및 사용 ※ 공간대여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간(공유사무실, 시간/월 단위 대여 전문연습실 등) 및 1인 예술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창작공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지원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8개월(2023년 6월~2024년 1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 지원 *월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 임차료 기준(부가세 제외) ■ 최고 4백만원 한도 지원 ↑개선 예1) 월 임차료 40만원×8개월×50% = 160만원 지원 예2) 월 임차료 60만원×8개월×50% = 240만원 지원 예3) 월 임차료 2백만원×8개월×50% = 8백만원 중 4백만원 한도 지원 |

| 사업추진 절차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신청</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심의 및 결과발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교부신청</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교부 및 사업수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네트워크 사업 시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정산보고</div> </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하는 바, 교부 신청 시 사업 내용 및 예산변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선정 취소 가능) ※ 서류심의 시 논의를 통해 현장실사를 추가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 후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기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심의항목</th> <th style="width: 70%;">심의내용</th> <th style="width: 15%;">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자격 평가 (30%)</td> <td>창작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td> <td>10</td> </tr> <tr> <td>단체의 예술창작활동의 예술성은 우수한가?</td> <td>10</td> </tr> <tr> <td>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td> <td>10</td> </tr> <tr> <td rowspan="4">운영 계획 평가 (40%)</td> <td>공간운영계획이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td> <td>10</td> </tr> <tr> <td>창작공간의 활용방법과 예술자립활동의 계획이 독창적이며 구체적인가?</td> <td>10</td> </tr> <tr> <td>창작공간의 활동지역 및 대상이 지역문화예술과 밀접한가?</td> <td>10</td> </tr> <tr> <td>공간운영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td> <td>10</td> </tr> <tr> <td rowspan="3">기대 효과 (30%)</td> <td>창작공간이 예술 현장으로써 상호 교류 활성화, 해당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td> <td>10</td> </tr> <tr> <td>창작공간의 예술자립활동이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td> <td>10</td> </tr> <tr> <td>지자체 및 기업과의 예술사업을 추진하는 창작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td> <td>10</td> </tr> <tr> <td>가산점</td> <td>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예술사업체인가?</td> <td>5</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105</td> </tr> </tbody> </table> | | | | | 심의항목 | 심의내용 | 배점 | 자격 평가 (30%) | 창작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10 | 단체의 예술창작활동의 예술성은 우수한가? | 10 |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10 | 운영 계획 평가 (40%) | 공간운영계획이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 10 | 창작공간의 활용방법과 예술자립활동의 계획이 독창적이며 구체적인가? | 10 | 창작공간의 활동지역 및 대상이 지역문화예술과 밀접한가? | 10 | 공간운영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10 | 기대 효과 (30%) | 창작공간이 예술 현장으로써 상호 교류 활성화, 해당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 10 | 창작공간의 예술자립활동이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10 | 지자체 및 기업과의 예술사업을 추진하는 창작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 10 | 가산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예술사업체인가? | 5 | 합 계 | | 105 | |
| 심의항목 | 심의내용 | 배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평가 (30%) | 창작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체의 예술창작활동의 예술성은 우수한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 계획 평가 (40%) | 공간운영계획이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창작공간의 활용방법과 예술자립활동의 계획이 독창적이며 구체적인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창작공간의 활동지역 및 대상이 지역문화예술과 밀접한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간운영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대 효과 (30%) | 창작공간이 예술 현장으로써 상호 교류 활성화, 해당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창작공간의 예술자립활동이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 및 기업과의 예술사업을 추진하는 창작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산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예술사업체인가?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1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신청 및 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단체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수 제출자료 | <p>①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신청서</p> <p>1-1. 창작공간 활용계획서</p> <p>1-2. 창작공간 현황 자료</p> <p>1-3. 단체소개서</p> <p>1-4. 예술단체 실적 자료</p> <p style="padding-left: 20px;">- 최근 3년간 2020~2022년 실적자료 최대 3건 제출</p> <p style="padding-left: 20px; color: red;">(단순 실적 사진이 아닌 신청단체 및 구성원 이름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여야 함)</p> <p>1-5.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사본</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1-6.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계약서만 유효함 - 부가세 표기 필수</p> <p>1-7. 신규계약 증빙서류 사본(계약연장 혹은 공간이전) (해당자에 한함)</p> <p>1-8.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p> <p>1-9.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p> <p>※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p> <p>※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1건의 PDF파일(영상 링크 하이퍼 링크 처리 필수, 불가능할 경우만 HWP로 제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 ‘사업체명 제출자료’ 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홍길동팀 제출자료</p> <p>※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p> |
| <p>의무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예술인은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 필수 참여 ※ 선정 후 별도 공지 예정 |
| <p>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 명의로 단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결격 처리 됩니다. ■ 지원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심의 시 심사위원 논의를 통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중복 지원으로 행정심사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p>문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31-0866) ■ 온라인 접수 시스템(엔카스)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장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진행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 접수 마지막날은 15시까지 운영)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

3.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
|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및 부족한 창작활동 공간의 수요 제고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누구나 <li style="padding-left: 20px;">※ 공고일 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여야 함 ※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보유 예술인 및 장애예술인단체 우대 (* 가산점 +5점) |
| 지원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2. 경기도 소재의 창작활동 공간 대관(2023년 대관만 가능) (연습공간, 작업공간, 녹음공간, 창작발표, 작품창고 등 대관 지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정확한 지원 금액 산정 및 지출증빙 안내를 위해 대관 공간의 용도 파악 후 지원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3. 대관 공간은 200만원 내에서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대관 공간 개수는 3개 이하 신청 가능 4. 대관 계약서 등을 통해 대관 관련 증빙이 가능한 공간 <li style="padding-left: 20px;">※ 선정 후 교부금 신청 시 대관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이에 근거하여 지원금 지급 예정 <li style="padding-left: 20px;">※ 창작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금은 대관에만 국한되며, 그 외 일체 비용은 지원 불가(부가세, 부대사용료, 홍보물 제작, 인건비, 회의비 등 지원 불가) |
| 지원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2백만원 한도 지원 ※ 1인(단체) 당 최대 3년까지 연속지원 가능 예1) 연습공간 20만원×10일 = 2백만원 지원 예2) (연습공간 10만원×5일) + (녹음공간 10만원×5일) + (창작발표 공간 100만원×1일) = 2백만원 지원 |
| 사업추진 절차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신청</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심의 및 결과발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교부신청</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교부 및 사업수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모니터링</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정산보고</div> </div> |
| 심의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하는 바, 교부 신청 시 사업 내용 및 예산변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함. 단, 예약만료 등의 문제로 대관공간을 부득이하게 변동할 경우 반드시 비슷한 용도의 공간으로 변동하여야 함(선정 취소 가능) |

| | | | |
|---|---|--|------------|
| | ※ 서류심의 시 논의를 통해 현장실사를 추가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 후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 가능 | | |
| 심의기준 | 심의항목 | 심의내용 | 배점 |
| | 자격 평가 (30%) | 대관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10 |
| | | 지원자(단체)의 예술창작활동의 예술성은 우수한가? | 10 |
| | |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10 |
| | 운영 계획 평가 (40%) | 대관계획이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 10 |
| | | 대관공간의 활용방법과 계획이 독창적이며 구체적인가? | 10 |
| | | 대관공간이 위치한 지역과 활동의 대상이 지역문화예술과 밀접한가? | 10 |
| | | 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이 사업에 적절한가? | 10 |
| | 기대 효과 (30%) | 대관을 바탕으로 한 창작활동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가? | 10 |
| | | 대관공간의 예술활동계획이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10 |
| 대관공간에서의 창작활동이 지자체 및 기업과의 협력예술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 | 10 | |
| 가산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보유한 도내 예술인/장애예술단체인가? | 5 | |
| | 합 계 | | 105 |
| 지원신청 및 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단체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 |
| 필수 제출자료 | <p>①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신청서</p> <p>1-1. 대관공간 활용계획서</p> <p>1-2. 대관공간 현황 자료</p> <p>1-3. 예술(인)단체 실적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2020~2022년 실적자료 최대 3건 제출 (단순 실적 사진이 아닌 신청인 혹은 신청단체· 모든 구성원 이름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야함) <p>1-4. 경기도 예술인 혹은 예술단체 증빙자료(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사본 *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필수 기재’ 하여 스캔이미지 첨부 -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사본 <p>1-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p> <p>1-6.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p> <p>② 선택사항 및 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장애예술인 단체 증명자료 <p>※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탭에 첨부하시</p> | | |

| | |
|--------------------|--|
| | <p>기 바랍니다.</p> <p>※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1건의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 ‘예술분야_신청자 본명’ 혹은 ‘사업체명 제출자료’ 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p> <p>예) 파일명 : 영화_봉준호 / 홍길동팀 제출자료</p> <p>※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p> |
| <p>의무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예술인은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 수강 필수 ※ 선정 후 별도 공지 예정 |
| <p>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선정 후 교부금 신청 시 대관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이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대관 계약서는 대관장소 계약서 양식이나, 교부시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양식 모두 활용 가능) ■ 지원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심의 시 심사위원 논의를 통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파일 용량이 100MB 초과할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의요망) ■ 지원신청서는 홈페이지 해당공고문의 한글(HWP) 파일로 된 지정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중복 지원으로 행정심사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p>*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사업은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사업을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의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p> |
| <p>문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31-0866) ■ 엔카스 사용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장 안내 • IT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진행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 접수 마지막날은 15시까지 운영)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

4.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구 분 | 세부 내용 |
|-------------|--|
| 사업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협동조합 결성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예술현장의 지속성장기반 구축 및 지원사업의 효율성(경영역량 확대) |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의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분야, 연령제한 없음 ①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3년 미만의 협동조합 - 사업실적, 업체현황 증빙서류 제출(지정서식) ※ 신청서에 용역계약 경력 및 수주금액 등 명시(해당자) ※ 경기도소재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② [예비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설립 의지 및 수행역량을 갖춘 경기도 거주 예술인 / 단체 - 협동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원 5인 이상을 확보한 팀 (예비조합원 리스트 제출 필수) ※ 사업수행 역량확인이 가능한 계획서, 예술활동경력 등 증빙자료 |
| 세부지원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설립 3년 미만 예술사업체(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혹은 예비 예술창업자에 설립 및 경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팀별 10,000천원) ■ 각 조합별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조합결성 및 경영화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멘토링) 지원 |
| 지원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지원금 : 금40,000천원(금사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지원 : 2023년 신규모집을 통해 선정(3팀×10,000천원) - 성장지원 : 2022년 기선정단체 중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1팀×10,000천원) |
| 추진절차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2px;">사업신청</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2px;">심의 및 결과발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2px;">교부신청</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2px;">교부 및 사업수행</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2px;">중간 및 결과 공유회</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2px;">정산결과 보고</div> </div> |
| 심의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3-5인 ■ 심의방식 : 행정심사와 2단계 심의(서류심의-인터뷰심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사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1차 : 서류심의 (제출서류 기반 고득점 순 선정, 인터뷰 심의 선정자 발표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 |

- 2차 : 인터뷰 심의 (제출서류 기반 1:1 질의응답, 최종선정 조합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단계가 변경될 수 있음

■ 심의기준(준비지원) ※ 서류심의와 인터뷰심의 심의기준 동일

| 구분 | 심의내용 | 배점 |
|------|------------------------------------|-----|
| 역량 | 지원단체의 역량이 본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가? | 30 |
| | 사업화 아이디어가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 |
| | 사업계획서가 컨설팅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가? | |
| 아이디어 | 사업화 아이디어가 예술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가? | 30 |
| |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
| | 사업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
| 참여동기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20 |
| | 컨설팅에 대한 필요성을 숙지하고 있으며 개선의지가 충분한가? | |
| 기대효과 | 예술인 일자리창출과 지역 예술향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20 |
| | 예술사업으로서 향후 시장 진출과 그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 |
| 합 계 | | 100 |

심의기준

■ 심의기준(성장지원) ※ 서류심의와 인터뷰심의 심의기준 동일

| 구분 | 심의내용 | 배점 |
|------|---|-----|
| 역량 | 지원단체가 본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가? | 30 |
| | 전년도 실적에서 파급된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 |
| | 사업계획서가 조합으로서의 성장에 있어 필요성과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가? | |
| 아이디어 | 사업화 아이디어가 예술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가? | 30 |
| |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
| | 사업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
| 참여동기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가 전년도에 활발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가? | 20 |
| | 전년도 컨설팅을 통한 개선 효과가 돋보였으며, 향후 컨설팅을 통한 개선의지가 충분한가? | |
| 기대효과 | 예술인 일자리창출과 지역 예술향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20 |
| | 예술사업으로서 향후 시장 진출과 그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 |
| 합 계 | | 100 |

| | |
|------------|---|
| 필수 제출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 서식1. 지원신청서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3. 활동증빙자료(포트폴리오) 서식4-1. (협동조합)사업자등록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필수 서식4-2. (예비협동조합) 대표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본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발생일/신고일이 보여야 함 서식5.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서식6.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선택제출자료 선택1. 지자체 및 기업 등 상호협력협약서 사본 (해당 시) ■ 제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필수 제출 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1건의 PDF 파일로 변환 후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첨부파일 업로드 후 최종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 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합명) -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활성화지원(대표자명) ※ 예시 : (협동조합) 협동조합활성화지원(무야호협동조합) <li style="padding-left: 40px;">(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활성화지원(김협동) |
| 의무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업은 2023년 11월내에 완료하여 정산결과보고 하여야 함 ■ 협동조합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전·중간·결과공유 워크숍에 의무 참여하여야 하며 컨설팅 및 모니터링 결과는 추후 2년차 성장지원 심의에 반영될 수 있음 ■ 선정된 예술인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 강화 교육 참석 의무 ※ 선정 후 별도 공지 예정 ■ 선정된 예술인은 재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선정 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과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검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타운영비 세목으로 수수료를 필수 편성하여야 함(신청서 내 수수료 기준 참고)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파일 용량이 100MB 초과할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음 (주의요망) ■ 지원신청서는 홈페이지 해당공고문의 한글(HWP) 파일로 된 지정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지원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전문가를 지원하여 사업체의 자립을 |

| | |
|----------------|--|
| | <p>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청 사업체가 컨설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요구하는 제출서류(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중복 지원으로 행정심사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p>신청제외 대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지원불가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 사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p>신청제외 사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의 방향과 맞지 않은 단순 창작활동,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기금 적립과 용자 지원 사업 |
| <p>신청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필수제출자료(지원신청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 ※ 우편,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 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함.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접수 바랍니다. |

| | |
|----|--|
| 문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231-0893) ■ 엔카스 사용 관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현장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진행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 접수 마지막날은 15시까지 운영)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
|----|--|